

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#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송미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9년 2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3. 개정이유

- 충북도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,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
-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충북도민이 보다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내용

-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4호)
-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-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신설함(안 제4조)
- 생활문화진흥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함(안 제5조)
-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관한 내용 신설(안 제6조)

-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과 충청북도 소유 유휴 공간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활용,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 이용 제한 및 취소·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7조)

## 5. 검토의견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도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,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,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충청도민이 보다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첫째,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
  - 둘째, 안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
  - 셋째, 안 제5조에서는 생활문화 지원사업의 보다 구체화된 사항을
  - 넷째, 안 제6조에서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
  - 다섯째, 안 제7조에서는 생활문화 시설 확충, 지원, 충청북도 소유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도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,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며, 지역 예술인과 주민의 교류를 바탕으로 도내 시·군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